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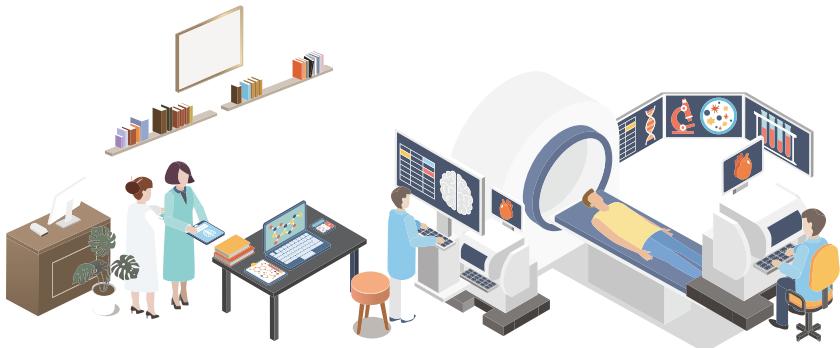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용 매뉴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h·well
국민건강보험



본 매뉴얼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과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는 그저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부족한 기능이 조금만 보완된다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동등하고도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바쁘게 돌아가는 의료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필요를 적절히 살필 여유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막상 장애인과 마주하고 나서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진의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용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현장에서 장애인 수검자를 대하는 태도,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매뉴얼 내용을 보고 검진기관 종사자분들이 ‘장애인 수검자를 대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구나’하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수검자 1명을 위해 몇 명분 이상의 노력이 드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경험이 더욱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소통 특성 등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에도 별 탈 없이 검진을 마치는 수검자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또한 여기에 실린 내용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종합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유연하고 열린 태도로 수검자를 대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지침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건강검진기관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 장애인 건강권법 이란?

2017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관리 체계 정비, 의료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차별 없는 권리, 동등한 접근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 건강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전체 인구에 비해 만성질환 등 질병 부담이 높지만,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 서비스는 덜 이용하는 한편, 입원과 같은 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법」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⑥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 ·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선정 및 지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II. 장애에 대한 이해

1. 장애의 정의

「UN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recognizing)'하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개념은 개인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에 주목하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장벽에 주목하는 사회적 모델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모델로 발전해 왔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기술이 갖추어지는 만큼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의료적 모델에 치우친 정의이나, 장애인 등록제도 운영의 근거로 제시된 행정적 정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은 삶의 모습과 방법이 조금 다를 뿐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사람 자체에 장애가 있는 것(disabled person)'이 아니라 성별, 연령, 인종과 같이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 중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person with disability)'입니다.

2. 장애인의 분류(장애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같은 장애유형 안에서도 장애의 원인, 중증도, 처한 상황에 따라 수검자의 필요가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장애의 발생원인

장애의 발생원인은 크게 선천적, 후천적, 그리고 출생 시 원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장애발생 원인의 89%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그 중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조고속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병과 관련된 장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III. 장애인 수검자를 대하는 기본자세

1. 사전 준비사항

수검자 특성 파악

-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 중증도, 관련 특성 등 기본 사항을 파악합니다.
- 사전체크리스트(부록 참조)를 활용해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필요한 보조기기, 특별한 요구사항 등을 의료진간 공유함으로써, 검진과정 중 동일한 질문이나 절차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 수어, 구화, 필담,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보호자 등

편의용품 준비하기

- 검진기관은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편의용품 및 보조기기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용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 점검

- 장애인 수검자의 동선 내에 장애물이 될 만한 구조물, 가구, 물품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나 물건들을 재배치합니다.

검진과정 관리

- 장애인 수검자에게는 검진과정 및 도구,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비장애인에 비해 검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해 검진 과정을 진행합니다.
- 검사 중 위험성이 느껴질 경우 강행하지 않으며, 불가능한 검사가 생길 경우 검사항목을 조정합니다.

2. 검진상황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공통적 응대방법

- 💬 처음에는 수검자에게 집중하며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동정심이나 과잉 친절 대신 진정성이 느껴지는 열린 태도로 자연스럽게 대하면 됩니다.
- 💬 검진 과정이나 결과를 상담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직접 소통합니다. 당사자의 양해 없이 가족, 활동지원사, 수어통역사 등 동행인하고만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수검자에게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 💬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도움이 필요한 지, 무엇이 편안한지 수검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불필요한 도움을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진료나 상담할 때에는 장애보다 수검자가 호소하는 그 날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 💬 수검자의 건강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합니다. 민감한 검사 결과나 진료 내용에 대한 정보는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수검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기술적 의사소통 요령은 점차 쌓아 가면 됩니다.

[부록]

장애인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

* 해당 서비스는 장애정도 중증(종전 1~3급)에게만 지원됩니다. 요청하신 지원 서비스는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수검자)	(조력인)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자폐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심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장루, 요루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검진희망일	년 월 일 시 분			
검진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구강건강검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임검진 <input type="checkbox"/> 위암 <input type="checkbox"/> 간암 <input type="checkbox"/> 대장암 <input type="checkbox"/> 유방암 <input type="checkbox"/> 자궁경부암 <input type="checkbox"/> 폐암			
구분	지원 내용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동행	1. 건강검진기관 방문 시 조력인(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과 동행하십니까?			
	1-1. 검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검진과정 전반에 조력인과 동행을 원하십니까?			
	2. 건강검진 과정 전반의 조력을 위해 안내인력의 동행이 필요하십니까?			
이동	3. 건강검진기관 방문 시 안내견의 대기장소가 필요하십니까?			
	4. 휠체어, 목발 등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전동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수동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지팡이 · 목발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의사소통	5. 검진과 상담 시 의사소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5-1.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수어통역 <input type="checkbox"/> 구화 <input type="checkbox"/> 필답(문자) <input type="checkbox"/> 대화용 장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서류작성	6. 검진 시 필요한 서류(문진표 등)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7. 검진 시 검사복으로 갈아입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검사진행	8. 선 자세로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9. 휠체어에서 검진장비로 옮겨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까?			
	10. 검사용 소변을 채취하는 데 인내 인력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결과상담	10-1.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 도뇨관을 사용해야 합니까? ※ 체뇨방법에 대해 검진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11. 검진 결과에 대해 직접 상담받기 원하십니까? (※별도 진료 필요)			
결과통보	12. 검진 결과지를 어떤 형태로 받아 보기를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일반 글자 <input type="checkbox"/> 점자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전자 점자파일 ※ 전자 점자파일을 요청하신 경우,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타				

지체·뇌병변장애 수검자 건강검진 매뉴얼



1. 의사소통방법 및 검진상황에서의 에티켓

지체장애는 골격이나 근육 혹은 신경 중 어느 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운동과 이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신체변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뇌병변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작, 운동과 이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지체 ·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대다수 보행 시 휠체어, 전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을 사용하는데 진료실이나 검사실 내에서 이러한 보조기기들을 사용,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 시에는 수검자가 올려다보지 않도록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약간 뒤로 물러서거나 몸을 구부려서 대화하면 됩니다.
- ☞ 언어장애를 동반한 장애인(뇌졸중, 뇌성마비 등)과 대화할 때에는 말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끝까지 듣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되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직접 소통하기가 많이 힘들어 조력인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수검자에게 묻고 양해를 구합니다.
- ☞ 수검자를 위해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의료진의 말을 이해했는지 거듭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도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검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묻습니다. 혼자서 이동하는 것이 더 익숙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 휠체어나 선반, 손잡이 등에 매달리거나 기대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검자에게는 휠체어가 몸의 일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 ☞ 지체 · 뇌병변장애 수검자에게는 신체나 목발, 휠체어 등을 잡아주는 것보다 문을 열거나 잡아주는 등 장애물을 신경써 정리해 주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를 탈 때는 보장구 등이 승강기 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휠체어에서 검진장비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어떤 형식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지 개방형으로 묻습니다.
- ☞ 불수의 운동, 강직, 경직 등이 있는 경우 춥거나, 재촉하거나, 억지로 자세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집니다. 수검자를 안심시키고 서두르지 않아야 원만하게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지체 · 뇌병변장애 수검자는 욕창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앉히거나 눕혀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흉수 6번 이상의 척수손상 수검자의 경우, 손상부위 아래에 통증 등의 자극을 받으면 자율신경과반사증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2. 검진준비



예약

- 검진기관은 장애인 수검자를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예약 및 연락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예약 시 같은 연락 경로로 회신 메시지를 보내어 신청한 내용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앞의 연락 경로로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와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 수검자가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검진기관에서 장애지원 서비스를 준비함을 안내합니다.

※ 장애유형, 의사소통을 위한 도움 필요여부, 사용중인 보조기기, 직원의 도움 필요여부 등

-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가 접수되면 장애인 수검자가 요청한 지원 서비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요청사항들을 관련 직원들과 사전 공유하여 반복되는 질문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금식, 생리 기간 제외, 임신여부 확인, 검진횟수 등)을 안내합니다.
- 영상검사가 있는 경우 지퍼, 단추 등 금속물로 된 부착물이 없는 옷을 입고 오시면 검사가 수월함을 안내합니다.
- 비장애인에 비해 검진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문진표 서식을 다운받아 사전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검진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관련법령 →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접수 및 수납

-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검자에게는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접수대로 안내합니다.
- 수검자에게 보행 또는 균형 장애가 있는 경우 접수나 대기 시 의자에 앉거나 설 때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수납 시 간단한 도움이 필요한 수검자에게는 접수 담당 직원이 적절히 응대하며, 사전에 검진 과정 전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수검자에게는 안내 인력의 지원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검자가 대기 시에는 대기의자 간격을 넓히는 등 휠체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문진표 작성

-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검자에게는 휠체어를 타고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용테이블이나 적절한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 문진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묻고 직원이 문진표 작성률 돋습니다.
- 이 때, 수검자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탈의

- 탈의 시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묻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안내 인력이 돋습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검자의 경우 휠체어 높이에서도 사용 가능한 캐비닛이나 신발장으로 안내합니다.
- 서서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경우, 탈의실 내에 성인 기저귀 교환 침대 사용을 안내합니다.
- 기존 검진복은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져 있어 입고 벗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검진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진

- 문진표를 바탕으로 개인병력 및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예진을 진행합니다.
- 장애 자체보다 장애인이 호소하는 건강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건강검진



신장

- 일반 신장계에서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지 검토합니다.
- 마비, 절단, 경직이나 구축으로 인해 선 자세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특화 신장계 등을 사용해 누운 자세로 측정합니다.
- 측정 시 낙상에 주의합니다. 필요시 신장계 근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체중

- 필요한 경우 휠체어를 탄 채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휠체어 체중계를 이용합니다.
- 측정 시 낙상에 주의합니다. 필요시 체중계 근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허리둘레

- 선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리둘레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합니다.



시력

-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검자의 경우 검사위치를 발이 아닌 눈의 위치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 시력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력표를 휠체어 사용 수검자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청력

- 청력검사 부스에 휠체어를 탄 채로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도구를 조용한 곳에 배치해 부스 밖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혈압

- 휠체어를 탄 채로 자동 혈압측정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 혈압측정기를 이용합니다.
- 상지에서 혈압측정이 어려운 경우 하지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상지 혈압보다 10~20mmHg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채뇨

- 채뇨 컵을 들고 안전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컵을 제공하거나 직원이 수거를 돕습니다.
- 사전체크리스트에 채뇨 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체크한 경우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동성의 인력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척수장애 수검자 중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도뇨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도뇨 등 채뇨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결정합니다. 검진기관에서 자가도뇨세트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채혈

- 강직 등으로 팔오금에서 채혈할 수 없는 경우 손등, 하지 등에서 채혈할 수 있습니다.
- 마비, 휠체어 사용 등으로 손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채혈 후 지혈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 다음 검진 장소로 안내합니다.



흉부방사선촬영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흉부 촬영기를 사용합니다.
- 수검자가 일어서기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촬영합니다. 이 때 등받이를 접어 내리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 직립이나 앉은 자세가 모두 불안정한 경우에만 양와위(supine) 촬영을 고려합니다.
-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촬영을 위해 휠체어나 침대로 옮겨가야 하는 경우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거나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유지를 위해 보조인력(직원이나 보호자)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차폐를 위해 납복을 제공합니다.



등받이가 접어지는 휠체어

등받이가 접어지는 휠체어를 사용한 흉부촬영 예시

누워서 찍을 수 있는 흉부x-ray



구강검진

- 검진대로 이동 시 보조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활용합니다. 이 경우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검진대로 이동이 어려울 시 휠체어를 탄 채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안내합니다.
- 안정적인 검진을 위해 머리지지기, 신체지지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검사

- 검진대 이동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거나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활용합니다. 이 경우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자세유지를 위해 보조인력(직원이나 보호자)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차폐를 위해 납복을 제공합니다.

4. 암검진



위·대장 내시경 검사

- 뇌졸중 등의 뇌병변장애 수검자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복용여부를 확인하여 중단여부 및 중단시점에 대해 미리 상의합니다.
- 경추 및 흉주의 해부학적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경우 신중하게 검사여부 및 방법을 협의합니다.
- 검진대로 이동 시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거나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활용합니다. 이 경우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낙상방지를 위해 사이드 레일이 설치된 이동형 침대를 사용합니다.
- 검사자세 등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간초음파 검사

- 검진대로 이동 시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거나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활용합니다. 이 경우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유방촬영 검사

- 상지지탱이 불가능하거나 척추측만이 있는 경우 유방촬영 검사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산부인과 진료대가 일반침대 보다 높아 낙상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검진대로 이동 시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거나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활용합니다.
- 구축이나 강직이 있는 경우 검진자세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긴장, 조급함, 당기거나 차가운 자극 등은 강직을 악화시키거나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검자를 안심시키고, 천천히 검진을 진행하며, 따뜻한 질경을 사용합니다.
- 검진대로 이동이 어렵거나, 검진자세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 진찰대(침대)에서 검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경의 손잡이를 위로 하여 사용합니다.
- 필요에 따라 자세유지를 위한 보조인력을 동반합니다.

5. 검진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검진결과 통보

-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는 2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됨을 안내합니다.
- 원하는 경우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합니다.
- 검진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 진료를 통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사후관리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등 유소견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위한 2차 건강검진 또는 해당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활용에 동의한 수검자에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수검자 건강검진 매뉴얼



1. 의사소통방법 및 검진상황에서의 에티켓

청각장애는 소리가 귀에서 뇌로 전달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어떤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하여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청력은 개인차가 크며, 청력이 약한 사람은 보조기(보청기, 인공 와우 등)를 사용하여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청각장애는 청각의 감도에 따라 농과 난청으로 구분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의학적 차이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귀결된 기능적 구분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실용적입니다.

농(聾, deaf)은 청각의 감도가 음성언어를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일차적으로 한국수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수어는 음성언어와 완전히 체계가 다르며 독자적인 문법을 가진 언어입니다. 이에 따라 언어 사용자의 사고(정보처리) 방식도 상이하기 때문에 건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통역지원이 필요합니다. 입술읽기(구화), 필담, 문자통역 등도 도움이 되지만, 음성언어에 기반 한 의사소통 방식이므로 이것만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난청은 맨 귀로 말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청기 또는 인공 와우를 착용하지만, 일차적으로 음성언어(한국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합니다. 한국어로 말하기, 쓰기, 읽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입술읽기(구화), 필담, 문자통역 등이 필요합니다.

- ☞ 청각장애 수검자는 어떠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청각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검진이 끝날 때까지 수검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과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를 종사자간에 잘 인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난청인은 일차적으로 보청기를 통해 음성언어(한국어)로 소통합니다. 입술읽기(구화), 필담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난청인은 한국수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농인은 청력손실이 90dB 이상인 사람으로 대부분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한국어는 제2의 언어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농인은 검진예약 단계에서부터 수어통역서비스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여 진료 당일 바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인과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할 경우 단문 위주로 간결하게 써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과 같은 시각보조 자료는 한국수어 사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청각장애 수검자와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 시 그들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시) 눈앞에서 손 흔들기, 팔을 가볍게 두드리기

☞ 청각장애인은 무조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듯이 대화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고 일정한 크기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잔존능력이 있는 경우 좌·우를 확인하여 좀 더 잘 들리는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 대화 시에는 눈을 마주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과 대화 시 수어통역사가 있더라도 수어통역사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 수어통역사가 있더라도 의사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되묻기 등의 방법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가 매번 모든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신호를 만들어 청각장애인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의료진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권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청각장애인에게 통역하지 말아야 할 내용은 수어통역사에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수어통역사는 모든 말을 그대로 수어로 통역하므로 통역되기 원치 않는 불필요한 혼잣말, 반말, 비속어 등은 삼갑니다.
- ☞ 구화는 상대의 말을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수검자와 대화 시에는 손이나 종이, 마스크로 입을 가려서는 안 되며 대화 도중 아래를 보거나 땀 곳을 보는 경우에는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 ☞ 청각장애 수검자가 대화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청각장애 수검자의 민감한 건강정보 등을 전달할 때는 보호자나 수어통역사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먼저 본인에게 원하는 의사소통 경로를 확인한 후 전달해야 합니다.
- ☞ 청각장애 수검자에게 검진자세 등을 지시할 때는 검진기관 종사자가 시범을 보이거나 그림, 글자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검진이동 경로는 손으로 방향을 알려주거나, 필담, 문자 메세지, 기관배치도 등을 활용하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 검사실이나 화장실 등의 출입문에 ‘검사 중’ 또는 ‘사용 중’과 같은 시각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검진기관 내 수어통역사가 부재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수어통역 센터, 손말이음센터, 문자통역서비스 기관 등과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진준비



예약

- 검진기관은 청각장애인의 검진예약을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예약 및 연락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예약 시 같은 연락 경로로 회신 메시지를 보내어 신청한 내용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앞의 연락 경로로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 수검자가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검진기관에서 장애지원 서비스를 준비함을 안내합니다.
※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방법, 사용 중인 보조기기, 직원의 도움 필요여부 등
-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가 접수되면 장애인 수검자가 요청한 지원 서비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 청각장애 수검자는 검진 예약단계에서 반드시 수어통역 필요여부를 확인하고, 검진당일 수어통역 서비스가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해 줍니다.
-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요청사항들을 관련 직원들과 사전 공유하여 반복되는 질문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금식, 생리 중 삼가, 임신여부 확인, 검진횟수 등)을 안내합니다.
- 영상검사가 있는 경우 지퍼, 단추 등 금속물로 된 부착물이 없는 옷을 입고 오시면 검사가 수월함을 안내합니다.
- 비장애인에 비해 검진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N 홈페이지에서 문진표 서식을 다운받아 사전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검진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관련법령 →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접수 및 수납

- 청각장애 수검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검진순서를 안내하고 호명할 것인지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청각장애 수검자는 이름을 호명하면 순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접수 및 대기실 등에 시각정보시스템(영상모니터, 화이트보드 등), 진동벨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직원이 직접 순서를 안내합니다.
- 접수 및 수납 시 수검자가 서류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기재해야 할 부분을 미리 표시해 두는 등 청각장애 수검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각적인 지원을 합니다.
- 수납 시 청구서 및 영수증 내역을 상세하게 손으로 짚어 확인해주고, 추후 예약일 및 검사일은 달력을 보며 확인해줍니다.
- 청각장애 수검자가 요청한 의사소통 방법을 의료진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검진기록지 등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문진표 작성

-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문진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문진표 작성을 돕습니다.
 - 수어통역으로 문진표 작성을 돕는 경우
 - 문진표의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작성된 정보를 보여주어 작성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태블릿을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의 문진표 작성 수어동영상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 건강iN(hi.nhis.or.kr)→건강자료실→건강동영상→건강검진→수어동영상/문진표 작성법



탈의

- 청각장애 수검자는 탈의 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탈의 후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으므로 검진순서 및 이동 동선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진

- 수어통역, 구화, 필담, 채팅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므로 표현이나 설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합니다.
-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청각장애 수검자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 합니다. 특히, 수검자 대신 수어통역사하고만 마주보며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문진표를 바탕으로 개인병력 및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예진을 진행합니다.
- 장애 자체보다 장애인이 호소하는 건강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건강검진



신장·체중

- 신장계측 자세를 그림, 시범 등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

- 음성언어를 발화하기 어려운 농인 수검자는 시력표의 내용을 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측정합니다.



청력

- 일반적인 청력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를 검사항목에서 제외해도 괜찮을지 먼저 물어봅니다.



혈압

- 정상범주가 병기된 그래프 등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청각장애 수검자의 측정결과가 어느 범주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체뇨

- 체뇨방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문이나 그림 등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 설명합니다.



채혈

- 채혈방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문이나 그림 등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 설명합니다.



흉부방사선촬영

- 검사진행 중 의료진의 협조요청(숨 참으세요, 숨 쉬세요 등)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모니터나 전광판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진과 수검자가 마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태블릿이나 간단한 글자판을 활용하여 협조요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구강검진

- 구강검진 시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수검자와 대화를 할 때는 잠시 마스크를 벗어 입모양이 보이도록 대화해야 합니다.
- 검진 중 통증 등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할지 (손을 듣다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검사

- 검사 전에 검사 부위를 미리 알려주어 수검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암검진



위·대장 내시경 검사

- 내시경 검사가 처음인 청각장애 수검자를 위해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한 설명 자료를 준비하여 대기시간 동안 볼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게 합니다.
- 검사진행 중 의료진의 협조요청(숨 참으세요, 삼기세요, 침을 옆으로 흘리세요 등)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모니터나 간단한 글자판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 환자를 안심시키고 의료진의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시경실 내에 보호자나 수어통역사를 동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초음파 검사

- 검사진행 중 의료진의 협조요청(배를 불리세요, 숨 참으세요, 숨 내쉬세요 등)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모니터나 간단한 글자판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 검사 중 모니터를 보고 설명하는 내용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끝난 후 선호하는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한번 더 설명합니다.



유방촬영 검사

- 유방촬영은 상당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합니다.
- 정확한 촬영 자세에 대한 그림이나 설명문을 준비해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촬영 자세를 위해 신체접촉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 대한 그림이나 검사 안내문을 구비해 검사 전 청각장애 수검자가 대기시간 동안 볼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게 합니다.
- 검사과정마다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글자판('소독 솜이 조금 차갑습니다', '지금 질경이 들어가면 조금 불편합니다' 등)을 준비하여 정보를 전달합니다.

5. 검진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검진결과 통보

-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는 2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됨을 안내합니다.
- 원하는 경우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합니다.
- 검진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 진료를 통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검진결과 상담 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시간을 충분히 배정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등 유소견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위한 2차 건강검진 또는 해당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활용에 대해 동의한 수검자에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수검자 건강검진 매뉴얼



1. 의사소통방법 및 검진상황에서의 에티켓

시각장애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의 손상으로 시력 또는 시야가 손상되어 **정보 접근과 이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각장애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全盲)'에서부터 물체의 형태를 어느정도 구분할 수 있는 '저시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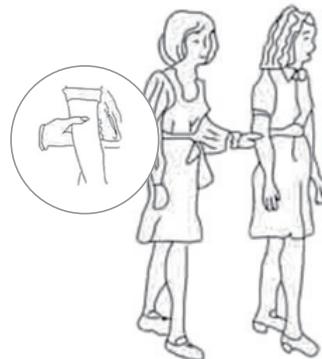
- ☞ 시각장애인 개인마다 시력손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두 전맹 시각장애인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도움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 시각장애인과 인사를 할 때는 멀리서 인사를 하는 것 보다는 가까이 왔을 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인사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 ☞ 진료를 하거나 말을 시작할 때는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과 직종을 소개한 후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만 말할 경우 시각장애인은 인사를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는 시각장애 수검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수검자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시각장애 수검자가 조력인(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과 동행한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조력인과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실례입니다.

- ☞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 안내견에게 말을 걸거나 음식을 주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안내견의 주의를 분산시켜 시각장애인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시각장애 수검자를 진료하거나 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각 단계마다 어떤 검사인 지 미리 구체적으로 주어야 하며, 몸에 검사 도구를 댈 때에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 ☞ 신체부위를 설명할 때에는 직접 신체모형이나 신체를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하지 않을 때는 시각장애인의 손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 ☞ 진료실이나 검사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자리를 떠나기 전에 모든 소지품을 챙겼는지 확인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 ☞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이동 시에는 주변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현재 대기실에서 검진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인원은 3명으로 ○○○님 순서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 안내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가까운 의자에 앉히거나 오가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벽 또는 기둥 곁에 편안히 서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고, 주변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는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 물건을 전해줄 때는 그것이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특히 컵을 전달할 때는 내용물도 함께 설명하고, 탁자 위에 놓으면서 손잡이를 잡도록 해주십시오.

- 👉 대기용 의자를 제공할 때는 시각장애인의 손에 의자 등받이나 팔걸이가 먼저 닿게 한 후 스스로 앉도록 해야 합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일 경우에는 의자 바닥에 손을 대주면서 등받이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방법

- 👉 길안내를 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의 팔꿈치 바로 위를 잡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안내자가 반보 앞서 걷습니다.
- 👉 시각장애인의 몸을 잡아 밀거나 끌지 말아야 하며, 흰지팡이나 옷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합니다.
- 👉 계단을 이용할 때는 계단의 한두 걸음 앞에서 잠깐 멈춰 서서 다음이 올라가는 계단인지 내려가는 계단인지 말해 줍니다.
- 👉 비좁은 곳을 안내할 때는 길이나 통로가 비좁다는 것을 시각장애인에게 말해 주고, 팔을 뒤로 뻗어 자연스럽게 안내자의 뒤에서 보행할 수 있게 합니다.
- 👉 길을 알려줄 때는 ‘이쪽’, ‘저쪽’과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몇 발짝 앞’, ‘몇 미터 앞’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 👉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출입문은 완전히 열어두거나 닫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쯤 열린 상태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2. 검진준비



예약

- 검진기관은 시각장애인의 검진예약을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예약 및 연락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예약 시 같은 연락 경로로 회신 메시지를 보내어 신청한 내용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앞의 연락 경로로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와 「시각장애인 위한 건강검진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 수검자가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검진기관에서 장애지원 서비스를 준비함을 안내합니다.
※ 직원의 도움 필요여부, 사용 중인 보조기기 등
-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가 접수되면 장애인 수검자가 요청한 지원 서비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내견과 동행할 예정이라면, 감염 위험 등으로 병원 내 안내견 출입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 양해 구하고 안내견 대기 장소가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합니다.
-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요청사항들을 관련 직원들과 사전 공유하여 반복되는 질문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금식, 생리 기간 제외, 임신여부 확인, 검진횟수 등)을 안내합니다.
- 영상검사가 있는 경우 지폐, 단주 등 금속물로 된 부착물이 없는 옷을 입고 오시면 검사가 수월함을 안내합니다.
- 비장애인에 비해 검진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N 홈페이지에서 문진표 서식을 다운받아 사전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검진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관련법령 →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접수 및 수납

-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내견과 동행한 경우, 안내견을 대기 장소로 이동시킨 뒤 직원이 직접 검진과정을 안내합니다.
- 시각장애 수검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검진순서를 안내하고 호명할건지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시각장애 수검자는 대기모니터를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음성안내 시스템, 진동벨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직원이 직접 순서를 안내합니다.
- 접수 및 수납 시 수검자가 서류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기재해야 할 부분에 시각장애인인 잡은 필기구를 직접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손에 지폐 또는 동전을 하나씩 건네주면서 소리내어 돈을 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진표 작성

- 시각장애 수검자는 적절한 조명이 필수적이며, 눈부심을 유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 및 안내문은 큰 글자, 점자 또는 음성안내문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는 공간에 영상 확대 비디오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문진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직원이 문진표 작성률 돋습니다. 이 때, 시각장애 수검자는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검자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탈의

- 탈의실 입구에 점자배치도를 게시합니다.
- 사물함의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물함 위치를 직원이 직접 안내합니다.
- 사물함 번호에 점자를 표시하여 번호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 탈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의 물기 또는 위험요소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예진

- 문진표를 바탕으로 개인병력 및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예진을 진행합니다.
- 장애 자체보다 장애인이 호소하는 건강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건강검진



신장·체중



- 검진 전에 신장계의 측정방법을 미리 설명합니다.
- 측정결과를 직접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바로 안내합니다.
- 신장계 발판이 좁아 중심잡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전 손잡이와 예비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

- 시각장애인 중에는 시력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항목에서 제외해도 괜찮을지 먼저 물어봅니다.



혈압

- 측정된 혈압수치를 알려주고 정상 범주여부를 설명해 줍니다.



채뇨

- 사전체크리스트에 채뇨 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체크한 경우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동성의 직원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뇨 컵을 들고 안전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컵을 제공하거나 직원이 수거를 돋습니다.
- 채뇨 수거함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화장실에 점자배치도를 통해 채뇨 수거함 위치를 표시하거나 채뇨 후 직원이 수거를 돋습니다.



채혈

- 채혈 시에는 시각장애 수검자가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검사인지 설명하고, 채혈 부위를 미리 짚어 설명해 줍니다.



흉부방사선촬영

- 시각장애 수검자가 스스로 정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촬영 자세를 말로 자세히 설명(손잡이를 잡고 어깨를 붙이고 계세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교정을 위해 신체접촉이 필요한 경우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 검사를 받는 동안 의료진이 관찰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합니다.



구강검진

- 시각장애 수검자가 스스로 검진대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수검자의 손을 의자에 대어 줍니다.
- 검진대가 높아 낙상 위험이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안전한 이동을 돋기 위해 신체접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수검자가 직접 치아 위치나 상태를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이의 위치나 상태 등을 구두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골밀도검사

- 시각장애 수검자가 스스로 검사대에 눕고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누울 위치에 손을 대어 설명해 주고, 촬영 자세를 말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 교정이 필요하면 시각장애 수검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세를 교정합니다.
- 검사를 받는 동안 의료진이 관찰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암검진



위·대장 내시경 검사

- 내시경 검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구두로 설명하여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시각장애 수검자가 스스로 검사대에 눕고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누울 위치에 손을 대어 설명해 주고, 검사 자세를 말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교정이 필요하면 시각장애 수검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세를 교정합니다.
-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드 레일이 설치된 이동형 침대를 사용합니다.
- 의식하 진정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회복과정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회복실 내 보호자 동석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간초음파 검사

- 시각장애 수검자가 스스로 검사대에 눕고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누울 위치에 손을 대어 설명해 주고, 검사 자세를 말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교정이 필요하면 시각장애 수검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세를 교정합니다.
- 시각장애 수검자는 갑자기 차가운 의료용 젤이나 탐촉자가 몸에 닿으면 놀랄 수 있으므로, 따뜻한 의료용 젤을 사용하고, 몸에 젤이나 탐촉자가 닿기 전 미리 설명합니다.
- 시각장애 수검자는 모니터를 볼 수 없으므로 오히려 검사 내용이 더 궁금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유방촬영 검사

- 유방촬영은 상당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합니다.
- 정확한 촬영 자세를 위해 신체접촉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산부인과 진료대가 높아 낙상 위험이 있음을 안내하고, 수검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검진대를 오르내리는 동안 보조인력이 검진대 옆에서 대기합니다.
- 검진대에 앉으면 침대가 올라가고 등으로 눕는 자세가 변함을 설명합니다.
- 검진과정 및 신체자극 등에 대해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5. 검진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검진결과 통보

- 사전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시각장애 수검자가 요청한 형식으로 검진 결과지를 준비합니다. 점자결과지를 요청하는 경우라도 사후관리를 위해 일반글자 결과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는 2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됨을 안내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우편물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우편발송 후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원하는 경우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합니다.
- 검진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 진료를 통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사후관리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등 유소견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위한 2차 건강검진 또는 해당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활용에 동의한 수검자에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수검자 건강검진 매뉴얼



1. 의사소통방법 및 검진상황에서의 에티켓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말합니다.

지적장애는 인지 발달이 항구적으로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이해, 학습, 언어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자기 관리, 대인관계, 사회생활** 등이 곤란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개인차가 큽니다.

자폐성 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 등을 통칭합니다. 공통적으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양상과 정도가 너무 다양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각이 파편화되어 있거나 지연되어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등의) **유연한 사고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에 따라 학습장애, 다양한 감각(청각, 시각, 미각, 촉각, 후각 등)의 과민 또는 둔감, 자기수용감각(proprioception) 저하, 협응운동장애(dyspraxia)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격적 행동, 충동적 돌발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다르지만 자폐성 장애인의 70%가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각 개인마다 독특한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어 물리적인 편의지원이 아닌 사람을 통한 관계적 편의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병력,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검자를 안정시키거나(좋아하는 것)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소(싫어하는 것) 등 수검자에 대한 정보를 돌봄제공자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발달장애 수검자와 라포르 형성하기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 누구나 그렇듯이 발달장애인도 자신을 칭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수검자를 반기는 표정과 태도로 맞이하고, 먼저 말을 걸거나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검진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돋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달장애 수검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초기 라포르(Rapport)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발달장애인은 각자 자신만의 소통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 많은 발달장애인은 말이나 음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 언어가 제한되어 있어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용언어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각 검사상황에 대해 부드럽고 친절한 어조로 설명하면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몸짓이나 얼굴표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얼굴 표정이나 몸짓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습니다.
- 바로 반응하지 않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그 상황에 집중해 듣고 이해하는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 검진 받으러 올 때 동행하는 분이 있다면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수검자와의 의사소통

 발달장애인과 대화할 때에는 쉽고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쉬운 단어로 말해주세요.

예시) 여기에 왜 오셨어요?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싸인해 주세요 → 이름 적어주세요

탈의실 → 옷 갈아입는 곳 / 흉부 → 가슴

X선, 골밀도, 유방암 촬영 →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해요

- 이중부정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이렇게 하세요(시범을 보이며)

- 애매한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적당히 쓰셔도 됩니다 → 5줄 적어 주세요

– 한 문장에서 한 가지 정보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예시) 이쪽으로 돌아누워 옷을 올리시면 검사를 시작할께요 → (방향을 가리키며) 제가 보이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주세요, 옷을 가슴까지 올려주세요, 이제 검사를 시작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이해속도에 맞추어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달장애인 중 상당수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질문을 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다른 형태의 질문으로 물어서 대답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발달장애 수검자가 아픈 부위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그림이나 신체 모형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수검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 수검자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더라도 얼굴표정을 찡그리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소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 검진 안내하기

☞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을 매우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 검진기관은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검진 예약일 전에 검진기관을 미리 방문하여 검사실 등을 둘러 보거나 의료진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 것,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진을 할 때 되도록 이 검사가 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신에게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게 되면 검사과정에 참여와 협조가 용이해집니다.

예시) 검사를 하면 아픈 곳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저도 아픈 곳이 있는지 해 봤어요.

☞ 일방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보다는 검진 단계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설명해 주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검사 상황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 이걸 하는지 설명해주고 검사를 시작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헬압을 챌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팔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프진 않을 거예요.

(초음파 검사에서) 검사가 시작되면 불이 꺼질 겁니다. 어두운 게 무서우면 말씀해 주세요.

☞ 검사도구나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 경우 만져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 검사자세가 다양할 경우 검사자가 미리 시연해 주면 좋습니다.

예시) 자 이렇게 ~~ 해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 발달장애인은 진료 및 검사 시 의사소통의 장애나 불안으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검진시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 수검자가 검사과정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수검자가 신뢰하는 보호자를 동행하게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발달장애인이 처음 검사를 받거나 통증을 동반한 검사 시에는 모든 검사를 다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무리하게 검사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진행되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발달장애 수검자가 긴 시간동안 진행되는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2년 후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힘든 경험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2. 검진준비



예약

- 검진기관은 발달장애인의 검진예약을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예약 및 연락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예약 시 같은 연락 경로로 회신 메시지를 보내어 신청한 내용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앞의 연락 경로로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 수검자가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검진기관에서 장애지원 서비스를 준비함을 안내합니다.
-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가 접수되면 장애인 수검자가 요청한 지원 서비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 발달장애인은 예약접수 시 본인의 의사표현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 함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함께 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혼자서 올 경우 자세한 위치를 전화 통화, 문자로 안내하고, 찾기 어려우면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안내합니다.
- 예약접수 시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 올 수 있는지 확인하여 문진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문진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 「장애인화 건강검진 사전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요청사항들을 관련 직원들과 사전 공유하여 반복되는 질문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급식, 생리 기간 제외, 임신여부 확인, 검진횟수 등)을 안내합니다.
- 영상검사가 있는 경우 지퍼, 단추 등 금속물로 된 부착물이 없는 옷을 입고 오시면 검사가 수월함을 안내합니다.
- 비장애인에 비해 검진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N 홈페이지에서 문진표 서식을 다운받아 사전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검진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관련법령 →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접수 및 수납

-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보호자나 친한 사람과 함께 검진을 받으려 갑니다. 하지만 혼자서 검진을 받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접수를 위해 발달장애 수검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잘 하지 못하거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알아듣기 힘들다면, 계속 물어보기보다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보다는 복지카드에 장애유형과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에는 발달장애라 표기되지 않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접수 · 수납 시 서류에 작성할 곳을 미리 표시해 주고, 한번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옆에서 안내 인력이 작성 도와주고, 작성 후 한번 읽어주면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돈 계산이므로 필요하면 직원이 대신 계산해 주고 영수증 내역을 상세하게 손으로 짚어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호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진표 작성

- 문진표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접수 시 발달장애인은 되도록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 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미리 문진표를 작성해 온 경우에는 작성된 문진표에 표기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 미리 작성해 오지 않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하지 물어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기다립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통해 문진표 작성법을 돋습니다.
예시) 문진표 '○○○님의 건강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질환력 '○○○님의 가족이 아프거나 병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탈의

- 탈의실로 가는 길과 착용하지 말아야 할 옷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 발달장애 수검자는 탈의 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가능하면 탈의실에 함께 들어가 옷장 위치와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진

- 발달장애인은 문진 시 반복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장애인의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말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 보호자와의 면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상담이 쉽지는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장애인과 눈을 맞추고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진표를 바탕으로 장애 및 개인병력을 고려하여 검사와 관련된 주의사항과 검진방법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3. 일반건강검진



신장·체중

- 키와 몸무게를 측정할 때는 움직이지 않고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잠깐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시를 참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 예시) (앞에 서서) 제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을 접어가며) 하나, 둘, 셋 동안만 잠깐 서 계시면 됩니다.



허리둘레

- 허리둘레를 측정할 때에는 접촉하기 전에 신체에 달을 수 있음을 미리 말해줍니다.
- 예시) 팔을 벌려주시면 제가 ○○○님의 허리를 감싸 안을 거예요.



시력

- 숫자, 글, 사물이 보이지만 인지가 어려워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 예시) 보이면 손을 들어주세요 / 안보이면 '안보여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보이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청력

- 청력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검사실 안에서 진행하지만 어려울 경우 밖에서 진행합니다.
- 오른쪽, 왼쪽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소리가 나면 손을 들어주세요'라고 설명합니다.



혈압

- 이 검사를 왜 하는지와 팔을 넣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잘 모를 경우, 위치를 조정해 주거나 시범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예시) 내 심장이 건강한지 알아보는 검사예요, 앉아서 팔을 넣어 보세요.
- 검사 시에 압박감과 풀어지는 시기를 알려주고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예시) 혈압을 쪄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팔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프진 않을 거예요. 검사하는 동안 움직이거나 말하지 마세요. 팔이 점점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풀어집니다. 다 됐습니다.



채뇨

- 화장실 위치를 안내합니다.
- 혼자 종이컵에 소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동성의 직원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변 컵을 받아서 놓는 장소를 크게 표기해 두거나 알려줍니다.



채혈

- 혈액검사는 주사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며, 최대한 안정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예시) (감정적으로) 두렵지요? 저도 무서운데 조금만 참고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끝나요. (감정 환기를 위해) 우리 크게 숨을 쉬어 볼까요.
- 안전함을 알려주고 발달장애 수검자가 준비되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 주먹을 쥐었다 펴다 하는 것을 시연해 줍니다.
- 발달장애 수검자가 주사바늘을 보지 않게 고개를 돌리거나 보호자나 안내 인력의 도움의 받아 주의를 환기하며 채혈을 진행합니다.



흉부방사선촬영

- 움직임이 많거나 가만히 서서 촬영하기 어려울 경우 누워서 촬영합니다.
- 숨을 들이마시거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세며 함께 숨을 참는 모습을 시연해 줍니다.
예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손가락을 접으며) 숫자 다섯을 셀 동안 숨을 참으세요. 됐습니다. 숨 쉬세요.
- 자세유지를 위해 보조인력(직원이나 보호자)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차폐를 위해 납복을 제공합니다.



구강검진

-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나 잇몸이 아픈지 알아보는 검사임을 설명해 줍니다.
- 치과의 소음 등은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으므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 등을 활용해 주의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 시야가 가려지면 무섭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수검자가 불편해 할 경우 소공포를 씌우지 않고 검진합니다.



골밀도검사

- 검사 전에 검사 부위를 미리 알려주어 수검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검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말이나 시연을 통해 설명하고, 낙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세유지를 위해 보조인력(직원이나 보호자)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차폐를 위해 납복을 제공합니다.

4. 암검진



위·대장 내시경 검사

- 발달장애 수검자를 위해 검사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한 설명 자료를 준비하여 대기시간 동안 볼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게 합니다.
- 발달장애 정도에 따라 수검자가 검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협조가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검사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검자의 심리적 안정 및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친숙한 보호자가 검사실에 동행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 자세 잡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가 어려운 경우 시연을 통해 따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과잉행동을 보이는 등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고 검사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초음파 검사

- 발달장애 수검자가 원활 경우 보호자가 검사실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 초음파 검사실은 어둡고 폐쇄되어 있어 발달장애 수검자가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불을 켜달라고 말하면 검사가 가능한 상황 정도로 조명을 조절합니다.
- 검사를 위해 옷을 올리는 것을 벗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부위를 가리키며 검사부위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옷을 올린건지 미리 설명해 줍니다.



유방촬영 검사

- 유방촬영은 상당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검사 시 놀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증발생에 대해 안내합니다.
예시) 기계가 유방을 납작하게 꽉 누를 겁니다. 놀릴 때 많이 아픕니다. 사진 찍는 동안만 참으면 됩니다.
- 검사자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체접촉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촬영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 자세유지를 위해 보조인력(직원이나 보호자)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차폐를 위해 납복을 제공합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발달장애 수검자를 위해 검사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설명 자료를 준비하여 대기시간 동안 볼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게 합니다.
- 검사 전 성관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관계 경험이 없으면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검사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를 구합니다. 수검자가 협조가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검사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 질검경 도구가 들어가기 전에 불안하지 않도록 진행과정(이제 시작할 거예요, 마음 편하게 앉아계세요. 아플 수 있어요 등)을 계속해서 따뜻하고 안정적인 어조로 설명합니다.
- 질경이 들어가고 검사를 하면 아프기 때문에 수검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사 도중 움직이면 검진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나 안내 인력이 잘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5. 검진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검진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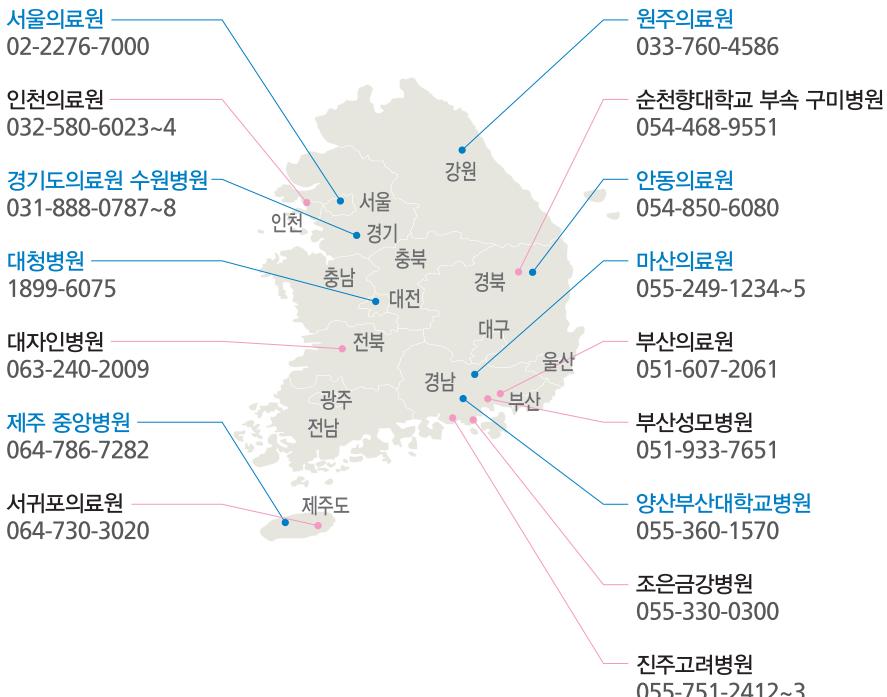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는 2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됨을 안내하며, 원하시는 경우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합니다.
- 검진결과가 모두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나 친한 사람에게 설명받을 것을 안내하거나 의사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싶으면 별도의 진료를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사후관리

- 건강검진 결과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전화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통화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재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활용에 대해 동의한 수검자에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앞으로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참고문헌]

- 장애인유형별 장애인 건강검진 매뉴얼 개발_의료인용 매뉴얼, 국립재활원, 2016.
-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재활원, 2017.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실천 매뉴얼, 보건복지부/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3.
- 201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실무기본과정,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2019.
- 장애인의 의료기관 내원 시 중요 POINT,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2018.
-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19.
- 발달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 지원하기,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015.